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가 매몰, 소각 또는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익수(박쥐)목 모든 종에 해당하는 포유류 등의 야생생물을 수출·수입 등의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89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을“(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의6(중전의 제3조의3) 중 “별표 2의2”를 “별표 제2의5”로 한다.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수자원공사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수자원공사는”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6”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3(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2조의3제4항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의6서식”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제30조 중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별표 2의 제목 중 “공장설립제한지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표 2의5 및 별표 2의6으로 하고,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5(중전의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3조의3 관련)”을 “(제3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중전의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인증취소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별표 2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 · cm<sup>-1</sup>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항온 건조기(Dry Oven) 1대
6. 로터리 증발기(Rotary evaporator) 1대
7. 흡후드(F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장용 온도계(Thermometer) 1대
12.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H meter)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Table top pH meter)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Chlorin colorimeter)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OES)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비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			

3)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 고 시험·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 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 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별표 8]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자격요건	인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실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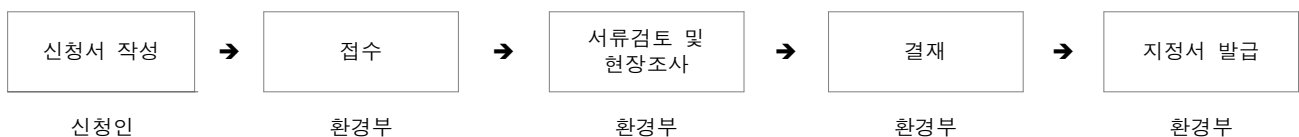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주소:
5. 실험실 주소:

「수도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을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실험실 주소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법」 제1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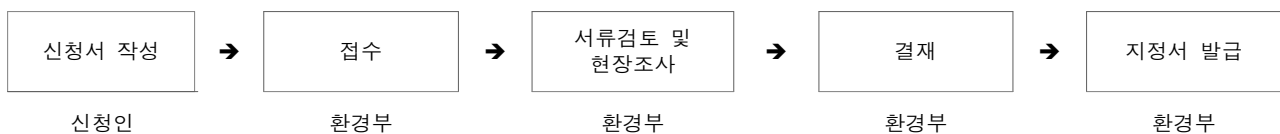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물절약전문업 [ ] 등록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신청내용	등록신청 구분	•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 •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사업[ ]	
	재발급신청 사유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 훼손[ ]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절약전문업의

[ ]등록  
[ ]등록증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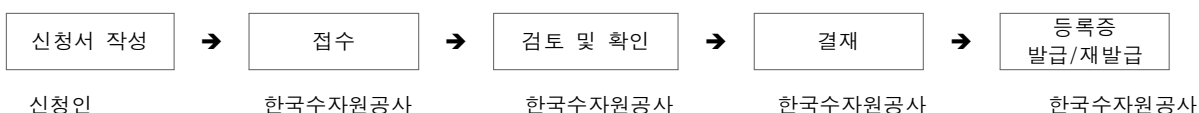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보고일시	00년 0월 0일, 00:00현재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 1. 보고 개요

가.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나. 시설명:

다. 수질기준 위반내용

○

라. 위반원인

○

### 2. 예상 또는 발생 피해 내용

가. 급수지역 및 급수인구(가구수):

나. 건강위해 발생 가능성

○

다. 그 밖의 재산피해

○

### 3. 조치계획

가. 비상급수 방안

○

나. 비상복구 등 시설 조치계획

○

다. 주민행동요령 공지 방안

○

라. 예상 복구 일시

○

### 4. 조치계획 적정성 평가 결과



신고번호 제 호

##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였음을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수도권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저수조청소업**                      **[ ] 폐업**                      **신고서**  
**[ ] 휴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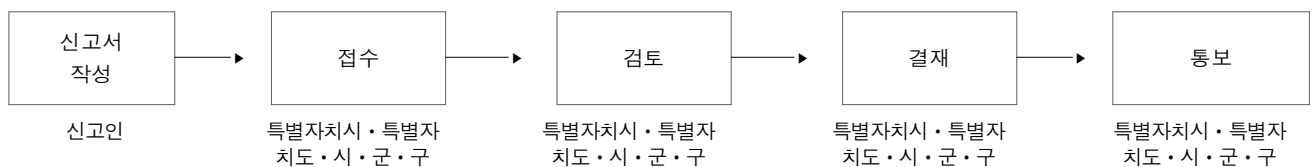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하고,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을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894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수도법」 제14조”로,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를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3장(제16조)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중 “가항”을 “나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색도	10,000
수은	23,000	탁도	10,000
셀레늄	30,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납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니켈	30,000	폼알데하이드	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7,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30,000	스티렌	45,000
플루오린(불소)	2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